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31
------------	-------

제출년월일 : 2023. 3.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청년들에게 면접 준비 비용 등을 지원하여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업범위를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청년 구직비용 절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근거규정 신설(안 제6조제2항)

###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3. 2. 9. ~ 2023. 3. 2.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 없음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면접 등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헤어스타일링, 메이크업 등)
  2. 그 밖에 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사업 추진·지원) (생략)</p> <p><u>&lt;신 설&gt;</u></p>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6조(사업 추진·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구청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 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 원을 할 수 있다.</u></p> <p>1. 면접 등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헤어스타일링, 메이크업 등)</p> <p>2. 그 밖에 구직비용 절감을 위하 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비용</p> <p><u>&lt;삭 제&gt;</u></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함.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송강미
연락처	02-3153-8644